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12. 30(수) 10:20

제2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교통건설국 명시이월 사업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비
합계 : 1개 부서 / 2건		1,636,141	1,505,858	0	647,231	858,627
도로과 (2건/1,505,858천원)	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	1,477,800	1,462,662	0	628,231	834,431
	신속한 제설대책	158,341	43,196	0	19,000	24,196

3. 검토의견

-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개 부서 2건 15억 585만 8천원으로
 - 도로과는
 -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이 보상금 미확정으로 21년 협의 후 집행 예정으로 이월하며
 -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은 제설장비 수리 및 제설제 구매를 위해 이월함.
-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0. 9. 10.] [법률 제17390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